#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3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 곽규택·김희정·이헌승

주진우 • 백종헌 • 김대식

박성훈 • 조승환 • 서지영

이성권 · 정동만 · 정성국

김도읍 • 박수영 • 조경태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 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 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안 제376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해사사건의 관할) 「법원조직법」제28조의7제1항제1호 각목의 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1조 중 "제7조 내지"를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37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에"를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	<u>&lt;삭 제&gt;</u>
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	
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	<u>&lt;삭 제&gt;</u>
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	
<u>할 수 있다.</u>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	<u>&lt;삭 제&gt;</u>
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	
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u>&lt;신 설&gt;</u>	제24조의2(해사사건의 관할) 「법
	원조직법」 제28조의7제1항제1
	호 각 목의 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u>&lt;신 설&gt;</u>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법원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 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u>제7조 내지</u> 제25 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 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 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 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u> 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
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
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이의 판할의 지성) 제28소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	
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 준용한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	
<u>제</u> 7조부터 제12조까	
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	
<u>20</u> 조부터 제24조까지,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u>X</u> ]	
<u>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u>	
②	
<u>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에</u>	